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‘특고종사자’)에 대한 규정 삭제 및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“노무제공자”로 재정의하는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,

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를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은 ▲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 를 “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”로 변경(안 제2조), ▲적용대상에 “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” 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(안 제3조) ▲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,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3년으로 시기를 변경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, ▲건강권, 교통비 지원,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(안 제10조), ▲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를 마련(안 제11조)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기준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어,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